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#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(양육비 채무자용)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양육비 채무자 | 성 명 | | 생년월일 | |
| | 주 소 | | | |
| 선지급 신청인 | 성 명 | | | |

1. 양육비 채권자가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**양육비 선지급 대상자**로 **결정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| 지원자녀명 | 신청인과의 관계 | 선지급금(월) | 선지급 시작 달 |
|---|---|---|---|
| | | 원 | 년 월 |
| | | | |
| | | | |

2.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(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) 지급됩니다. 다만, 양육비 채무자가 **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**할 수 있으며,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경우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3. **양육비 선지급금은**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10에 따라 **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**하며, **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**

4.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될 예정입니다.

※ 업무담당자: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

년 월 일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

## 참고사항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(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)이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
2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

## 이의신청 안내

**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,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으로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**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**30일** 이내에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